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 12. 1.

북 지 도 시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국 환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경위

- 가. 제안자 : 마포구청장
- 나. 제출일 : 2009. 11. 17
- 다. 위원회회부 : 2009. 11. 19
- 라. 위원회 회부근거 :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영리 제2공영주차장 내 체육시설 증축 계획과 관련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

3. 주요내용

- 영리동 174-3 영리제2공영주차장 내 3층 옥상 공간을 활용 1,546.93㎡의 체육시설 증축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 건립계획현황

소재지	지목	토지 공부면적	건물(㎡)					용도	비고
			층별	기존	증축	합계			
영리동 174-3	주차장	2,483.3㎡	1층	2,136.36	+15.95 (엘리베이터실)	2,152.31	공영 주차장		
			2층	2,133.37	+15.95 (엘리베이터실)	2,149.32			"
			3층	203.17	+1,546.93	1,750.1	체육시설		
			합계	2,136.36	+1,578.83	2,152.3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공사 추진일정

- 2010. 1 ~ 2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010. 3 ~ 6 : 공사발주 및 착공
- 2010. 12 : 준공

다. 염리제2공영주차장 현황

- 위 치 : 마포구 염리동 174-3
- 대지면적 : 2,483.3㎡ (751.20평)
- 규 모 : 2층 3단
- 주차면수 : 총216대 (1층 65대, 2층 72대, 지붕층 79대)
- 준 공 : 2006. 7. 1

라. 예산조치 : 2009년도 편성 예산 및 2010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편성

- 총사업비 : 5,202백만원
- 예산확보 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육시설 증축			비고	
	합계	2009년	2010년		
내 연 별	합 계	5,202	18	5,184	
	공 사	3,789		3,789	
	설계·용역	245	18	227	
	체육용품구입	130		130	
	기 타	1,038		1,023 15	특별회계보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재 원 별	합 계	5,202	18	5,184	
	시 비	1,661		1,661	
	구 비	1,041	18	1,023	
	기 금	2,500		2,500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5. 검토결과

□ 제출경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영리제2공영주차장내 체육시설 증축계획과 관련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의안임.

□ 검토의견

-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접해 있는 영리초등학교 학생 체육활동 공간 제공을 위하여 영리동 174-3호 영리제2공영주차장내 3층 옥상 공간을 활용 1,546.93㎡의 체육시설 증축 및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로 2010. 3월 착공하여 2010. 12월 준공 예정임.
 - 체육시설 설치계획은 배드민턴 7코트에 농구, 배구장겸용 체육관 및 탁구, 요가, 단전호흡, 체조, 발레 등의 다목적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 건립재원은 총 5,202백만원이며, 시비보조금 16억 6,100백원, 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 2,500백원, 구비 1,041백원으로 충당하도록 계획 되었으며,
 - 주차장 부지내에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주관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총 연면적의 30%내에서 운동시설 설치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체육시설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 주차면수 감소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없는지 면밀한 조사 및 체육시설 설치 입지가 적정하며, 주민들의 적정한 수요가 있는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통상 한정된 예산을 안정적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후 예산편성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지켜지는)관례이나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0년도 예산과 함께 제출되었음.
- 이는 사업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중요한 사업일수록 규정과 절차는 지켜야 사업추진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임.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 (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 ④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법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08.4.18, 2008.12.31>

1.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①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장 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① 「주차장법」 제2조5의2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70%이상인 것을 말한다.

※운동시설 : 체육관으로써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